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의안 번호	817
----------	-----

제출연월일 : '99 10.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정사유

-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98. 2. 24)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안산시여비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국내여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안산시여비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제정(안 제명)
- 안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
-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를 적용(안 제3조)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안 제4조)
-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안 제5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상시출장공무원의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는 월액여비의 출장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3.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여비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여비규정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절차와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

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별표1 제1호의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